



법령정보

## 입법예고 등 공고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개정(안)」행정예고
-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 - 152호]

####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대규모화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강화(협의 대상 확대 및 규모 조정 등)를 통하여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확대 및 규모 조정(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별표1)

- (1) 최근 재해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30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확대
- (2) 산사태 위험 가중에 따라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 협의규모를 4km에서 2km로 조정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서 '개발행위 허가 전'으로 변경하고, 타법 개정(법률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및 동일 목적(공장설립)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간, 규모 등 조정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하류부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 성격의 보호적 규제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삭제(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①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별표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①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p> <hr/> <hr/> <hr/> <hr/> <hr/> <p>—————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4조 &lt;삭제&gt;</p> <p>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행정계획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도·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가. 국도·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국토기본법」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국토기본법」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 의 시기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 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7)「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7)「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다만, 같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8)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다만, 같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9)「농어촌정비법」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9)「농어촌정비법」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0)「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0)「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1)「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1)「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2)「도서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2)「도서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5)「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6)「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의 지정	촉진지구 지정 전		
				(17)「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단지 지정 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단지 지정 전			

현행			개정안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시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시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시
				(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계획 수립시
				(10)「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조성지역 지정 전
다.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2)「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3)「농어촌도로정비법」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3)「농어촌도로정비법」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항공법」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항공법」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2)「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협약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약 시기	협약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약 시기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어촌·어항법」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2)「어촌·어항법」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항만법」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광업법」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5)「광업법」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6)「산지관리법」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산지관리법」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2)「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현행	개정안
<p><b>[비고]</b></p> <p>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위 표의 가목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3.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p>	<p><b>[비고]</b></p> <p>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위 표의 가목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녹지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3.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p>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한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한함)	개발행위 허가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6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6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5)「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8)「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10)「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10)「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1)「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현행			개정안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시행인가 전		(1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시행인가 전
	(15)「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전		(15)「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전
				(16)「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8)「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개발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9)「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작성시)
				(20)「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1)「점경지역지원법」제8조에 따른 점경지역 사업	사업 시행승인 전
				(22)「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협약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약 시기	협약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약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장과 협의시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장과 협의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 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 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	공장설립 등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	공장설립 등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별표1의 대상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별표1의 대상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수립시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1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수립시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5)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31조 2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조성실행계획 승인 전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현행			개정안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협의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다. 에너지 개발	계획 (2)「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에 따른 집단 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에 한함)	공사계획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계획 (2)「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에 따른 집단 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에 한함)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노반·궤도시설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2)「도시철도법」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2)「도시철도법」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공사 시행 전	(4)「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공사 시행 전	
(5)「항공법」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5)「항공법」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소하천정비법」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소하천정비법」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2)「항만법」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2)「항만법」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협약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약 시기	협약대상	대상 행정계획	협약 시기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	임도 설치 전	(6)「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	임도 설치 전	
	(3)「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3)「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6)「석탄산업법」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7)「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 허가 전	(6)「석탄산업법」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실제 훼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채광계획 인가 전	(7)「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 허가 전	
			(8)「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실제 훼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채광계획 인가 전	
			(9)「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전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0)「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2)「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온천법」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5)「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4)「온천법」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현행	개정안
<p>[비고]</p> <p>1. 위 표에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10,0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3.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비고]</p> <p>1. 위 표에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10,0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4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되,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p> <p>3.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방재정보광장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개정(안)」행정예고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1 - 148 호

### 1. 제정이유

- 현행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는 사면의 형상과 피해예상도 등의 평가항목만을 점수화하여 위험등급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석류 발생 위험 등에 평가기준이 미흡하여 토석류 발생여부를 조사자가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C급사면에 대하여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적용범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도는 이와 접한 산지

### 3. 주요내용

#### 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위험등급 확대(안 제4의 1)

- 1)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도 등급은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할 수 있다.

#### 나.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항목 추가(재해위험도 평가표)

- 1)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발생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조사자 보정점수 항목 추가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1 - 135호

### 1.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에게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한 복구로 삶의 재기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이 필요하여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풍수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 피보험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안 제12조제2항)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정 2011. 10. 27. 소방방재청 훈령 제 251호

법령정보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복구사업의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확정·시행한 사업을 말한다.
2.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유역·수계, 배수구역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

4. “재해저감성 평가”란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 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란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당해년도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법적근거 및 관련계획, 기준 등과의 연계성)**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석·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반영·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수립
2.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3.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의 제정·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5.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6. 「소하천정비법」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7. 지역별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제5조(평가시기)** 시·군·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3조의 대상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시설별 피해 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저감능력과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과 사후관리체계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과 지역 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개별 및 종합평가

**제7조(분석평가 방법)** 재해복구사업의 지역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 하여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단계
  - 가. 재해현황
  - 나. 행정자료
  -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 가 일반특성 분석
  - 나. 과거 재해기록 분석
  - 다. 수리·수문 현황 분석
4. 원인분석 단계
  - 가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 나. 재해 취약요인 분석
  - 다.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5. 분석·평가단계
  - 가. 재해저감성 평가
  - 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 다.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6.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제8조(평가 수행주체와 평가결과 작성)** 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시·군·구청장이 직접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시·군·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공무원(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직무관련자),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하는 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시·군·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평가결과 제출과 활용)** ① 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최종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 방안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 방안
3. 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 방안
4.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및 기준의 연계방안

**제11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10.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